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78호 2012. 3. 6.(화)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27호(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2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29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0호(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1호(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2호(인천광역시연수구연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32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3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5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194호(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수탁기관 모집공고)
..... 55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민상 시상과 관련하여 수상부문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 다수의 후보자 발굴 등을 통한 시상으로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로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에 대한 수상부문으로 “산업증진상” 신설 (제2조) ○ 수상 대상자의 연수구 거주기간을 명시하여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함 (제3조) ○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있어 수상부문별로 지정되어 있는 추천권자 사항을 변경하여 부문별로 많은 후보자가 추천 될 수 있도록 조항 변경 (제4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27호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증진상

제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을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은”을 “다만,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제4조) -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제8조 및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 감량 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2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 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제과영업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16조에 따른다.

④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업소, 다량배출사업장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재정적인

지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표지판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3ℓ 미만의 경우도 제작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

른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수수료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종량제 봉투와 혼합하여 지급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건조 부산물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
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 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 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 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0	70	10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 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 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50	7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 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 고 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사 업 장 규 모	⑥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 산 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수구청장 □□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칼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칼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칼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⑯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여 의회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어린이도서관 소관 위원회 변경 (기획주민위원회 ⇒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29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마목 “어린이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바목 “각 동 사무 중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마목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다목 “각 동 사무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 “어린이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및 동 주 민 센 터 소 재 지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 개 정 이 유 ○ 2012. 1. 1일자 송도동 행정운영동 분동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 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송도동 행정운영동 분동에 따라 송도동 소재지를 송도1동 소재지로 개정하고 송도2동 소재지를 신설하여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송도동란을 송도1동란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송도1동란 다음에 송도2동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송도1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
송도2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일상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호 추가(제9조제1항제8호 ~ 제12호)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1개호 수정(제9조제2항제7호) -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로 수정 ○ 위에 따른 공표대상의 공표시기 변경(별표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12.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표대상의 공표시기(제14조 관련)

일련 번호	공 표 내 용	공개 시기	비 고
1	중장기종합계획	수시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연4회	1월, 4월, 7월, 10월
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수시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시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5	당해연도 업무계획	연1회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연1회	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7	자체평가결과	연1회	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8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9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수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3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	수시	결재후 1개월 이내
14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시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15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수시	계획 확정일과 용역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16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수시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수시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18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수시	최종결재 후 1개월이내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수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2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수시	최종결재후 1개월이내
21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그 결과 (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수시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22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시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23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시	공개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내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보안등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확대.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2011년 1월 10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의 지원 항목 및 지원 기준을 개정 ☐ 주요 내용 ○ 조례명 개정 - 당초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 전기요금지원조례」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개정 ○ 지원사항 변경 - 당초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3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의 설치 장소를 구청 청사내에서 연수구 관내로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상담원 등의 증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센터운영 담당 부서 명칭 “고용안정” 을 포괄적 의미의 “일자리지원” 으로 변경함(제2조) ○ 센터의 설치 장소 “구청 청사내” 를 포괄적 의미의 “연수구 관내” 로 변경함(제3조) ○ 센터의 업무 중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운영관리” 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본 센터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임으로 “운영 관리” 를 “이용” 으로 변경(제3조) ○ 담당 인원 증원(제4조)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2명의 직업상담원을 5명으로 증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안정” 을 “일자리지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 청사내” 를 “연수구 관내”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상담원 및 일자리 발굴단(이하 “상담원 등” 이라 한다)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상담원의 채용등)”을 “(상담원 등의 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상담원”을 각각 “상담원 등”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상담원”을 각각 “상담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정 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 구축은 물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평가대상(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 평가절차(제2장) - 매년 평가지침과 평가계획 작성·실시 - 연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 평가결과의 활용(제3장)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상황 확인·점검 실시 -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

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에 이를 시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포함)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담당구역 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 구의 책무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7조~제12조) ○ 도시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제13조) ○ 도시농업 관련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수구의회의 의원 1명
2. 연수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흥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교육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의 개최)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모·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5.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22조(준용)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예 따라 관련조례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용도,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금운용관리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 추가 (제6조)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개정 (제10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3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

· 보수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5.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6.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7.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8.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9.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0.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1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1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1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4. 재난 관련 장비 구입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수탁기관 모집공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29일

연수어린이도서관장

1. 사 업 명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교육장소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내(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3. 위탁사업비 : 팔천만원(W80,000,000) 상·하반기 각 40,000천원
 -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 : 2012. 4월 ~ 7월(4개월)
 -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 2012. 9월 ~ 12월(4개월)
4.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5.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2. 2. 29 ~ 3. 14 (15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장소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749-8255)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 교부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비치 및 연수구,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6. 위탁내용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수강생 모집 및 관리

7. 교육대상

- 연수구민 중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

8. 교육내용 : 붙임의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9.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어린이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천광역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기관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내용이 도서관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위탁에 적합할 것

○ 위탁조건

- 전담인력 배치 운영
- 수강생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기본안의 강좌수, 교육횟수 및 수강인원이상 교육실시
- 본 사업을 정치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목적으로 운영 불가
- 수탁기관은 구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며 추후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철저히 이행(공증 및 이행보증보험가입등)
- 강사운영은 해당 분야 강의 경력자,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도서관 회원으로부터 제안된 강좌 및 프로그램 내용 운영

10.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1부
- 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계획서 1부
- 기관(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이력 및 현황 1부
(법인(단체) 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정관 포함)
- 기타 사업수행 실적 소명자료 1부 (자유서식, 해당기관만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1. 선정절차

운영기관 모집공고 ⇒ 신청서접수 및 검토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개별통보 ⇒ 협약체결

12.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은 2012. 3월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신청기관의 대표자(위임가능)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대표자 포함 최대 2명이 심사위원회에 입실 가능
(프리젠테이션 등 5~10분 내외 분량, 일정은 추후 통보)
- 선정기준
 - 위탁단체의 적합여부, 사업운영 경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 능력, 향후 운영 의지 등

13. 협약체결

- 심의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선정된 기관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 가. 제출 서류 A4 크기 상철로 편철하여 각 12부 (원본1, 사본11)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 처리함
-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 및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참조
- 바. 문의사항 : 연수어린이도서관(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032-749-8255

연수어린이도서관장

붙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내용

□ 교육내용 편성 : 총 18 강좌 이상 필수 편성

○ 독서 프로그램 8강좌 이상

○ 독서 연계 외국어 프로그램 10강좌 이상

□ 교육내용

○ 공통방향

- 프로그램 공히 독서와 연계된 프로그램 내용 구성

- 교육개시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필수 시행**

○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교육시간 : 1강좌 1시간씩 주 1회(15회차)

※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강좌는 7~8회차 운영

- 초등학생의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책 읽기 습관형성 및 독서능력 고취

- 세계문화이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포함으로 국제화,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체험형 교육 **필수개설**

- 자녀의 독서활동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편성

○ 운영강좌(필수개설)

-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채택된 다음프로그램의
1강좌 필수개설

대상	모집 인원	강좌명	내 용
유아 (5~7세) 또는 초등 저학년 이하	15	생태 연계 프로그램	- 공원에 위치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특성을 살린 생태독서(전래동화 등)를 접목한 독서프로그램

○ 운영강좌(예시)

※ 초등저(2강좌), 초등중(3강좌), 초등고(2강좌), 부모(1강좌) 운영

대상	모집 인원	강좌명	내 용
초등 1~2	15	그림책과 친구하기	- 그림책을 함께 읽고 감상하며 글로 표현해 보는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초등 1~2	15	북아트	- 책을 통해 주요 상식을 배우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표지도 만들며 책완성의 기쁨과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북아트 과정
초등 3~4	15	미술과 함께하는 읽기	- 세계 명작 그림을 보고 이해해 보며 그림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초등 3~4	15	문화탐방	- 문화유산의 재미있는 역사 및 유래를 알아 한국사와 세계사의 이해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유익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초등 3~4	15	세계 문화 여행 <다문화이해>	- 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해 보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의 의미와 다문화 가정을 이해보는 과정

초등 5~6	15	NIE	- 신문의 세계 주요 토픽을 읽고 세상을 알아가며 다양한 관점의 사고를 통해 주요 시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초등 5~6	15	연극으로 책읽기	- 선정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며 연극놀이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
성인 (학부모)	회차별 100명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강좌	- 자녀의 어린이의 첫 선생님인 부모를 대상으로 책 읽기의 효과와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회차별 상이한 내용의 교육 실시

○ 독서연계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교육시간 : 1강좌 1시간씩 주 2회(30회차)
- 외국어와 독서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생 주도적이며 체험 위주의 문화 교육을 시행
- 교과 과정 외 프로그램 구성으로 교육의 효과와 함께 흥미와 즐거움을 부여
- 학생의 레벨과 학년을 고려하여 외국인 강사와 외국어 원서를 수업에 적절히 사용

○ 운영강좌(예시)

※ 유아(3강좌), 초등저영어(2강좌), 초등중영어(3강좌), 초등고영어(1강좌), 초등중국어(1강좌) 운영

대상	모집 인원	강좌명	내 용
5세	8명	엄마와 함께 <Mom & Me>	- 동화 교재를 통해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한 영어 습득 과정 - 색깔, 모양, 숫자 등 기초적인 학습 단계

6세	8명	스토리텔링 <Reading & Story Telling>	- 유아를 대상으로 구연동화 수업을 진행 - 도서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 관련된 단어 및 문장을 노래로 불러보는 학습
7세	8명	노래와 함께 <Reading & Singing>	- 동화책을 사용하여 영어로 노래 부르는 과정 - 키워드 익히기를 통해 문장을 활용하여 노래 학습
1-3학년	8명	옥스퍼드 책과 문화읽기 <Oxford Bookworms Factfiles>	- 옥스퍼드 북웜스 책을 사용하여 외국의 모습이나 생활을 각 테마별로 배워보는 시간
1-3학년	12명	영어연극 <English Play>	- 해외 명작 동화를 통해 연극의 요소를 알아보고 대본 읽기와 대사를 통한 학습 과정 - 무대 꾸미기 및 무대 공연 진행
4-6학년	8명	세계문화여행 <World Traveler>	- 나라별로 소개된 책을 읽고 이해하고 글로 써보는 과정 - 책을 통한 간접 세계 견학 기록문 작성(미술 연계)
4-6학년	12명	신문 읽기와 쓰기 <Newspaper>	- 선정된 책을 책 소개 형식의 각자의 칼럼 신문을 작성하며 미술과 연계된 수업으로 진행 - 책을 읽어 보고 영자 신문을 만들어 보는 수업
4-6학년	8명	나도 방송가 <Broadcaster>	- 선정된 책을 읽고 책 내용을 방송 스크립트를 작성 후 소개 -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크로마키를 이용하여 방송 제작 과정을 배우는 수업
5-6학년	12명	영어 스피치 <Public Speaking>	- 선정된 책을 읽고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 해보는 과정 - 무대 적응과 실제 영어말하기 대회 간접 경험 제공
초등 초급	8명	중국어 초급 <Women shuo Hanyu>	- 문화를 통한 중국어 이해 수업 - 지리, 역사, 생활 방식 등 중국 문화에 대해 두루 살펴 보기

[서식1]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위탁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자격분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2. 월 일 기관대표 : (인) 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귀하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세부사업 추진계획 (자유서식 가능)

○ 사업수행인력 운영 계획(전문강사확보방안등)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기타 운영 계획 (사업운영의지-추진능력, 지역사회연계사업의 협력성등)

☐ 사업내용

○

☐ 월별 추진일정

○

☐ 수준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방안

○

○

☐ 운영예산서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사업 평가 방안

○

※ 사업신청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임의작성 가능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증빙자료 제출

[서식3]

법인·단체 이력 및 현황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 설립목적(정관등으로 확인)

○

□ 주요시설현황

○

□ 기구 및 인력현황

□ 주요 자산현황(부채현황도 기재)

○ ※부채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할 것(추후 발견시 실격조치)

□ 주요연혁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경력등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